



승인번호
제117078호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사 주관기관



조사 연구기관



2026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공급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의뢰를 받아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26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공급 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7078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행과 양질의 서비스 확충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의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87)에 해당하는 전국 사업체 중 통계적 방법에 의해 표본으로 추출된 5,000개 사업체이며, 귀사가 조사 대상 사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귀사의 사업 및 운영 현황, 고용 실태, 재무 실태, 사회서비스 디지털 전환, 서비스 질 관리,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정책 인식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사의 편의에 따라 방문조사, 유치조사, 온라인 조사 등의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여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체의 경우 2인 이상의 응답자가 조사표를 파트별로 나누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엄격하게 보장됩니다. 응답 내용은 보안처리가 되어있는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되며, 향후 연구결과물(통계자료, 보고서 등)이 공개될 시 응답자가 식별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삭제됩니다.

본 조사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귀사는 조사 참여를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조사 중에도 조사 참여 동의를 자발적으로 철회하고 참여를 중단하여도 되며, 조사 참여의 철회나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없을 것입니다. 조사 중 참여를 중단하시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이전까지 작성하신 응답은 폐기됩니다. 마지막 문항까지 응답한 경우만 유효처리 되며, 조사에 끝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응답자에게 5천 원 상당의 답례품이 지급됩니다.

귀사에서 응답하신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귀중한 정책 자료로써 활용됩니다. 조사결과는 연구 용도로만 사용될 것이며, 국내외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 분야의 연구 자료로써 발표 및 게재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6년 0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은 부연구위원

[연구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하태정 전문연구원(☎ 044-287-8165)

이주민 연구원 (☎ 044-287-8240)

[조사 문의] 0000 000 과장(☎ 000-000-0000)

000 부장(☎ 000-000-0000)

업종코드		행정구역분류부호	
표본구분	① 전수 ② 표본	LIST ID	
사업체명		비고(특이사항 기재)	
면접원 ID		면접원 성명	
검증원 ID		검증원 성명	

응답표 작성요령

- 특별한 응답 지시문이 없을 경우 모든 응답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회계연도 기간이 이와 다른 경우에는 최근 결산기를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 본인이 아니라, 사업체(시설·기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문항마다 설명과 응답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내용 중 특별한 안내문이 없는 한 모든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 종사자 수, 금액 또는 % 부분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0' 또는 '-'를 표시해 주십시오.

면접원 기입란

○ 응답자 1 기본 정보

응답자성명		응답자직위	
부서명		연락처	
응답부분 (모두응답)	☐ 1) A. 사업체 일반현황 ☐ 2) B. 주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 3) C. 고용 실태 ☐ 4) D. 재무 실태 ☐ 5) E. 사회서비스 디지털 전환 ☐ 6) F. 서비스 질 관리 ☐ 7) G.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정책인식		
면접일시	2026년 월 일 (오전/오후)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 응답자 2 기본 정보

응답자성명		응답자직위	
부서명		연락처	
응답부분 (모두응답)	☐ 1) A. 사업체 일반현황 ☐ 2) B. 주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 3) C. 고용 실태 ☐ 4) D. 재무 실태 ☐ 5) E. 사회서비스 디지털 전환 ☐ 6) F. 서비스 질 관리 ☐ 7) G.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정책인식		
면접일시	2026년 월 일 (오전/오후)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 응답자 3 기본 정보

응답자성명		응답자직위	
부서명		연락처	
응답부분 (모두응답)	☐ 1) A. 사업체 일반현황 ☐ 2) B. 주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 3) C. 고용 실태 ☐ 4) D. 재무 실태 ☐ 5) E. 사회서비스 디지털 전환 ☐ 6) F. 서비스 질 관리 ☐ 7) G.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정책인식		
면접일시	2026년 월 일 (오전/오후)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 응답자 4 기본 정보

응답자성명		응답자직위	
부서명		연락처	
응답부분 (모두응답)	☐ 1) A. 사업체 일반현황 ☐ 2) B. 주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 3) C. 고용 실태 ☐ 4) D. 재무 실태 ☐ 5) E. 사회서비스 디지털 전환 ☐ 6) F. 서비스 질 관리 ☐ 7) G.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정책인식		
면접일시	2026년 월 일 (오전/오후)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A. 사업체 일반현황

A1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일반사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A1-1-1 소속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명을 기입합니다.

A1-4-1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리를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를 기입합니다.

A1-1 사업체명			A1-1-1 법인명		
A1-2 사업체 창설년월		년 월	A1-3 대표전화	() -	
A1-4 사업자 등록번호		-	A1-4-1 국세청 고유번호		-
소재지	A1-5 시도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A1-5-1 시군구	_____시군구			

A2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조직(운영)형태는 무엇입니까?

i 응답가이드

- 1) 개인 사업체 :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입법·사법·행정기관, 국·공립학교, 국·공립 의료법인 등
- 3) 회사법인 : 상법상의 주식회사·유한·합자·합명회사
- 4) 회사이외법인 : 학교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특수법인(법무법인, 회계법인, 공사, 공단), 사회복지법인 등
- 5)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종교단체, 종친회, 동창회, 후원회 등

- | | |
|------------------------------------|---|
| ☐ 1) 개인 사업체 |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 3) 회사법인 | ☐ 4) 회사이외법인 |
| ☐ 5) 비법인단체 | |

A3 귀 사업체(시설·기관)가 아래 설명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포함된다면,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중복으로 해당되면 해당 유형을 모두 선택(✓)하시고, 해당되지 않는 사업체는“해당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i 응답가이드

-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인증, 수리, 인가 등을 받은 사업체는 해당되는 유형에 모두 체크합니다.
- 지자체 조례 및 부처 지침을 근거로,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업체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체크합니다.

- 1) 인증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2)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지역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3) 협동조합 :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성조직
- 4) 마을기업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 5) 자활기업 : 저소득 실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

- | | |
|-------------------------------------|-------------------------------------|
| ☐ 1) 인증사회적기업 | ☐ 2) 예비사회적기업 |
| ☐ 3) 협동조합 | ☐ 4) 마을기업 |
| ☐ 5) 자활기업 | ☐ 6) 해당 없음 |

A4 귀 사업체(시설·기관)는 프랜차이즈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i 응답가이드

-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부회사(프랜차이즈)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로열티, 가맹금 등을 본부회사에 지불하는 대신, 상품, 교육, 경영관리의 노하우 등을 제공받는 사업체임(예시: 가사서비스 프랜차이즈 OOOO, 돌봄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 ☐ 1) 가입함
☐ 2) 가입하지 않음 → **문A4-1로 이동**

A4-1 향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거나 가입(가맹)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1) 예 ☐ 2) 아니오

A5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를 감안하여 다음의 기업 성장 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 응답가이드

- 1) 창업기 : 사업체 창업 또는 설립 후 1년 이내의 사업체로서 주력 사업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개발하는 단계
- 2) 초기성장기 : 서비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 진입의 단계
- 3) 성장기 : 서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영업·마케팅 활동을 하고,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단계
- 4) 성숙기 :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단계
- 5) 쇠퇴기 : 매출액, 시장점유율, 수익성 등 경영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업종 전환 또는 폐업을 고려하는 단계

- ☐ 1) 창업기
☐ 2) 초기성장기
☐ 3) 성장기
☐ 4) 성숙기
☐ 5) 쇠퇴기

B. 주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 사회서비스 사업 영역 분류표 〉

구분		사회서비스 세부 내용
1. 성인 돌봄	노인, 장애인, 기타 성인 돌봄 및 보호 서비스	▪ 시설 내 돌봄 서비스 ▪ 재가방문 서비스 ▪ 주간보호·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 ▪ 간호 및 간병 서비스 ▪ 복지용품·보장구 지급(침대, 휠체어, 보행기, 보완대체의사소통(ACC), 응급안전알림장비, AI 스피커 등) ▪ 식사제공 서비스(경로식당,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식사준비, 빨래 등) ▪ 이동지원 서비스(차량지원, 병원 및 외출 동행) ▪ 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 서비스 등
2. 아동 돌봄	출산지원, 보육, 방과 후 돌봄, 아동·청소년보호 서비스	▪ 임신·출산지원 서비스(임신·출산 바우처, 임신부 철분제 지원 등) ▪ 임신부·신생아 영양관리 서비스 ▪ 산후조리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시설 내 돌봄·보육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 방과후돌봄 서비스 ▪ 학교부적응,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보호지원 서비스 ▪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 서비스 ▪ 가정위탁, 아동입양 관련 서비스 등
3. 신체 건강	건강증진 및 재활 서비스 ※ 일반의료, 건강검진 서비스는 제외	▪ 운동, 금연, 절주, 식생활 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 ▪ 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서비스 ▪ 생활체육 서비스 ▪ 작업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재활 서비스 등
4. 정신 건강	상담 및 심리지원 서비스	▪ 상담서비스(아동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 ▪ 음악·놀이·미술 등 심리치료, 언어치료 및 발달재활 서비스 ▪ 알콜·약물·인터넷·게임 중독 관리 서비스 ▪ 우울 및 자살 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 학대 및 폭력 피해자(아동, 노인, 성·가족·학교 등) 심리지원 서비스 등
5. 교육 및 정보제공	아동 및 성인 교육지원, 정보제공 서비스	▪ 아동 학습지원, 방과후 교육지원 서비스 ▪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서비스 ▪ 재무설계·노후설계 지원 서비스 ▪ 세무·법률지원 서비스 등
6. 고용	고용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서비스	▪ 취업알선 서비스 ▪ 구직지원 및 상담 서비스 ▪ 직업훈련 서비스 ▪ 재취업 교육 서비스 ▪ 창업 공간지원 서비스 ▪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
7. 문화	문화 및 여가 서비스	▪ 문화예술 관람 및 문화예술 교육 서비스 ▪ 여행, 관광 등 여가지원 서비스 등
8. 주거	주거제공 및 지원 서비스	▪ 주거지(주거공간) 제공 서비스 ▪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주택 내 무상수리 및 부품교체 등) ▪ 에너지 효율 개선 서비스(단열, 창호교체, 난방용품 설치 또는 교체 등) ▪ 주택 개보수 및 집수리, 이사지원 ▪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주거관련 교육 서비스 ▪ 청소 및 방역 서비스 등
9. 환경	환경 서비스	▪ 환경 변화 대응 서비스(라돈 측정기,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 물품 지원) ▪ 친환경 물품 지원 서비스 ▪ 환경성 질환 예방 서비스 ▪ 석면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

B0 귀 사업체(시설·기관)는 위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직접 제공하셨습니다습니까?

i **응답가이드**

- 사회서비스 사업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관련 사업체를 중간 지원하는 협회 또는 단체의 경우 “2) 제공하지 않음”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협회 또는 단체 중 사회서비스 사업을 직접 제공하였다면 “1) 제공함”으로 응답합니다.

- ☐ 1) 제공함 → **문 B1 으로 이동**
☐ 2) 제공하지 않음 → **문 C1 으로 이동**

B1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i **응답가이드**

- 2025년 1년간을 기준으로 **매출액(혹은 세입예산) 비중이 큰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대상을 응답합니다.
- 매출액(혹은 세입예산) 구분이 곤란한 경우, **이용자 규모가 큰 순서**로 응답합니다.
- 2026년 1월 이후에 시작한 사업(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B1-1 <사회서비스 사업 영역 분류표>를 참고하시어 아래 보기에서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주요 사업내용을 선택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최대 5개까지 입력 가능)

B1-1 주요 사업내용		[보기]	
1		① 성인 돌봄	⑥ 고용
2		② 아동 돌봄	⑦ 문화
3		③ 신체 건강	⑧ 주거
4		④ 정신 건강	⑨ 환경
5		⑤ 교육 및 정보제공	

B1-2 아래 보기에서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주요 사업대상을 선택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최대 5개까지 입력 가능)

B1-2 주요 사업대상		[보기]	
1		① 영유아(0~5세)	⑨ 한부모가족
2		② 아동·청소년(6~18세)	⑩ 다문화가족/이주민
3		③ 청년(19~34세)	⑪ 근로자/실업자/구직자
4		④ 중장년(35~64세)	⑫ 노숙인
5		⑤ 노인(65세 이상)	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⑥ 장애인	⑭ 차상위 계층
		⑦ 여성	⑮ 구분없음
		⑧ 가족	⑯ 기타(적어주십시오:)

B2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시설유형이 이용시설인지, 아니면 생활시설인지 응답해 주십시오.
둘 다 해당되는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 1) 이용시설: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 2) 생활시설: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거주,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유형

- ☐ 1) 이용시설 → **문 B3 으로 이동**
☐ 2) 생활시설 → **문 B4 로 이동**

B3 **【이용시설】**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이용자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B3-1 연간 이용자 수(명)

- 2025년 1년간 귀 사업체(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를 연인원과 실인원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동일한 사람 10명이 한 달에 20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연인원은 10명 x 20일 x 12개월 = 2,400명이고, 실인원은 10명입니다.

B3-2 비용 부담 유형별 이용자 비율(%)

- 실인원 기준 서비스의 이용자를 서비스 비용의 부담유형에 따라 무료 및 유료 이용자 비율을 표시합니다.
- 유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 납부하는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 유형별 비용부담의 비율의 합은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합니다.

B3-1 연간 이용자 수		B3-2 비용 부담 유형별 이용자 비율(%)			
연인원	실인원	무료 이용자		유료 이용자	
명	명	%	+	%	=100%

→응답 후 **문 B5 로 이동**

B4 **【생활시설】**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거주자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B4-1 연간 이용자 수(명)

-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사업체(시설)에서 생활한 거주자의 정원과 인원을 기입합니다.
- 정원은 시설(사업체) 설치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인원, 현원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현재의 인원을 의미합니다.

B4-2 비용 부담 유형별 거주자 비율(%)

- 생활시설 거주 비용을 부담하는 유형에 따라 현인원 기준 거주자(생활자) 비율을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각 유형별 비용부담의 비율의 합은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합니다.

B4-1 연간 이용자 수		B4-2 비용 부담 유형별 거주자 비율(%)			
정원	현원	무료 이용자		일부 자부담 거주자	전액 자부담 거주자
명	명	%	+	%	%
					=100%

→응답 후 **문 B5 로 이동**

B5 귀 사업체(시설·기관)는 2025년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제공하십니까?

i 응답가이드

- 전자바우처 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 ☐ 1) 제공함 → **문 B5-1**으로 이동
☐ 2) 제공하지 않음 → **문 B6**으로 이동

B5-1 제공한 전자바우처 사업을 아래 보기에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 ☐ 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 ☐ 5) 발달재활서비스 | ☐ 6) 언어발달지원사업 |
| ☐ 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 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 ☐ 9)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 10)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 ☐ 11) 일상돌봄서비스 | |

B5-2 전자바우처 사업은 바우처 지원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의 자격기준 변동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귀 사업체의 전체 전자바우처 사업 이용자 중에서 서비스 이용 종료 이후에도 서비스 비용 전액을 개인이 지불(전액 자부담)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 1) 없음 | ☐ 2) 3% 미만 |
| ☐ 3) 3~5% 미만 | ☐ 4) 5~10% 미만 |
| ☐ 5) 10~20% 미만 | ☐ 6) 20% 이상 |

B6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사업 수행 지역(범위)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래 보기 중 선택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사업 수행 지역이 1개 이상의 경우 2), 4), 6)번 보기와 같이 관할 지역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사업체 소재지 근처 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2)에 체크(✓)하고 □□에 3이라고 기입합니다.

- | | |
|---|---|
| ☐ 1) 사업체 소재지의 1개 읍면동 | ☐ 2) 사업체 소재지 근처 □□ 개 읍면동 |
| ☐ 3) 사업체 소재지의 1개 사군구 | ☐ 4) 사업체 소재지 근처 □□ 개 사군구 |
| ☐ 5) 사업체 소재지의 1개 특별·광역사도 | ☐ 6) 사업체 소재지 근처 □□ 개 특별·광역사도 |
| ☐ 7) 전국 | |

B7 귀 사업체(시설·기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B6 에서 응답한 지역) 내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시설·기관)가 있습니까?

- ☐ 1) 있다 → **문 B7-1**로 이동 ☐ 2) 없다 → **문 B8**로 이동

B7-1 있다면, 대략 몇 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개소로 파악

B8 귀 사업체(시설·기관)가 더 많은 서비스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역점을 두는 활동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기관특성상 이용자를 추가 확보할 필요가 없거나 불가능한 사업체는 8)번으로 응답합니다.
(예시: 의뢰를 통해 이용자 모집, 대기자가 많은 경우 등)

- | | |
|---|--|
| ☐ 1) 이용자 욕구 파악 및 신규 서비스 개발 | ☐ 2) 부가서비스(기본서비스 이외 추가서비스) 제공 |
| ☐ 3) 서비스 이용료(가격) 인하 | ☐ 4) 서비스 품질 향상 |
| ☐ 5)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 | ☐ 6) 시설 투자 |
| ☐ 7)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 8) 기관특성상 이용자 추가 확보 불필요 |
| ☐ 9) 기타(적어주십시오:) | |

B9 귀 사업체(시설·기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당면한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차례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1) 서비스 제공인력의 잦은 이직 및 구인의 어려움 | ☐ 2) 낮은 서비스 단가 |
| ☐ 3) 이용자 확보의 어려움 | ☐ 4)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요구사항과 불만 |
| ☐ 5) 업체 간 과도한 경쟁 | ☐ 6) 서비스 수요 예측의 어려움 |
| ☐ 7) 사업 수행에 따르는 각종 규제 | ☐ 8) 지자체 및 유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담 |
| ☐ 9) 예산 지원 부족(보조금 지원 시설의 경우) | ☐ 10) 기타(적어주십시오:) |

C. 고용 실태

C1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 가이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i C1-1 2025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체(시설·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를 기입합니다.

응답
가이드

● 임금근로자

- 정규직: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특별한 고용계약 없이도 정규 직원으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상용 근로자
- 비정규직: 위의 정규직 외 무기계약직,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계약 반복 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등
- ☞ 단,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에 대한 관리를 해당 사업체로부터 받지 않는 파견·용역 근로자는 기타 근로자에 포함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 위의 비정규직 종사자 중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비임금 근로자

- 해당 사업체로부터 고정된 임금을 받지 않는 고용주(1인 사업체인 경우 자영업자)
- ☞ 해당 사업체로부터 고정된 임금을 받는 유급 기관장(예: 법인시설장)은 임금근로자(정규직 또는 비정규직)로 포함합니다.
- 무급가족종사자

● 기타 근로자

-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에 대한 관리를 해당 사업체로부터 받지 않는 파견·용역 근로자
- 공공근로,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 시설 이용자·사업 참여자에 해당하는 유급 근로자(근로장애인 등)
- 인턴사원, 사회복무요원

C1-2 2025년 1년간 종사자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신규 채용, 이직에 해당하는 종사자 수를 기입합니다.

- 신규 채용: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한 종사자 수 (법인 내 시설 이동, 복직 등은 제외)
- 이직: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발적 퇴직, 고용계약 종료, 구조조정 및 해고, 사업체 경영상 휴직한 종사자 수(법인 내 시설 이동, 정년퇴직 및 사망, 병가·육아휴직 등은 제외)

C1-3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2025년 1년간 지급한 각종 세금 공제 이전의 급여액을 합산한 총액을 기입합니다.

C1-4 2025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C1-1 에서 1)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을 기입합니다.

C1-5 ~ C1-6 2025년 12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종사자(C1-1 에서 1)임금근로자) 수를 기입합니다.

C1-7 2025년 12월 31일 기준 직종별 종사자(C1-1 에서 1)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의 수를 기입합니다.

- 관리직: 시설·기관의 사업 등의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인력(시설장, 원장, 센터장, 소장, 사무국장, 총무, 실장, 국장, 부장 등)
- 전문직/준전문직(직접 서비스 제공인력): 사회복지(상담, 보육 포함), 치료·재활, 보건의료, 돌봄, 영양 관리 등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 사무직: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금전취급 활동, 법률 및 감사, 상담, 안내 및 접수 등의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행정 사무원, 회계 및 경리 사무원, 방문고객 상담원, 시설예약 접수원 등)
- 기타: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같이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경비원, 청소원, 주차관리원 등)
- ☞ 전문직/준전문직이 관리직을 담당할 경우 관리직으로 기입하고 전문직/준전문직이 사무직을 주 업무(60% 이상)로 담당할 경우 사무직으로 기입합니다.

구분		C1-1			C1-2				C1-3		C1-4			
		종사자 수(명)			연간 이동 종사자 수(명)		연간 세전 급여총액 (백만 원)		평균 근속기간		년		월	
1) 임금 근로자	소계 (①+②)								백만 원					
	① 정규직								백만 원					
	② 비정규직								백만 원					
	②-1 초단시간 근로													
2) 비임금 근로자														
3) 기타 근로자														

구분	C1-5 성별						C1-6 연령대별											
	남성			여성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종사자 수(명) (정규직, 비정규직만 해당)																		

구분	C1-7 직종별									
	관리직		전문직/준전문직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			사무직			기타	
종사자 수(명) (정규직, 비정규직만 해당)										

C2 귀 사업체(시설·기관)는 2025년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구인, 채용 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까?

- ☐ 1) 전혀 어렵지 않았다
 ☐ 2) 어렵지 않았다
 ☐ 3) 보통이었다
 ☐ 4) 어려웠다
 ☐ 5) 매우 어려웠다
- **문 C3 로 이동**
 → **문 C3 로 이동**
 → **문 C3 로 이동**
 → **문 C2-1 로 이동**
 → **문 C2-1 으로 이동**

C2-1 귀 사업체(시설·기관)에서 인력확보가 어려웠던 이유는 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1) 취업지원자가 없음
 ☐ 2) 지원자 중 직무능력 갖춘 자가 없음
 ☐ 3) 열악한 근무여건(임금, 작업환경, 복지환경 등)
 ☐ 4) 해당 직종/업종의 장기 발전가능성 한계(불투명)
 ☐ 5) 타사업체와의 인력유치 경쟁
 ☐ 6) 사업체 주변의 열악한 정주여건
 ☐ 7) 구직자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 8) 출퇴근 불편
 ☐ 9) 기타(적어주십시오:)

C3 2025년 기준으로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종사자(임금근로자) 급여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1) 정부부처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 2) 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
 ☐ 3) 별도의 사업체(혹은 법인)의 보수 관련 내부규정(보수규정, 급여규정 등)
 ☐ 4) 최저임금 수준
 ☐ 5) 별도의 근거 규정·기준 없음
 ☐ 6) 기타 기준(적어주십시오:)

C4 귀 사업체(시설·기관)에서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정할 때, 아래 기준에 따라 임금 수준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까? 적용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때 또는 매년 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아래 항목별 기준에 따라 임금 수준에 차등을 적용하고 있는 지 여부를 응답합니다. (직위/직급 변화,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 변화는 모두 제외)
종사자 임금 수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면 모든 항목에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분	적용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 현재 사업체(시설·기관)에서의 근속기간(호봉, 근속년수 등)	☐ ①	☐ ②
2) 관련 업종에서의 경력	☐ ①	☐ ②
3) 자격증 획득 여부 또는 자격 등급	☐ ①	☐ ②
4) 개인별 사고과 결과 또는 사업(영업)성과	☐ ①	☐ ②
5) 기타(적어주십시오:)	☐ ①	☐ ②

C5 2025년 12월 31일 기준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보험 가입 현황을 응답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C1-1 에서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의 보험 종류별 대상 종사자, 가입 종사자 각각의 숫자를 기입합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기준(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인 사업체)을 고려한 귀 사업체의 가입 대상 종사자와 가입된 종사자 수를 기입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65세 이후 고용된 자,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인 자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등) 기준을 고려한 귀 사업체의 가입 대상 종사자와 가입된 종사자 수를 기입합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기준(1개월 미만 고용 기간의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시간제공무원·교직원 등)을 고려한 귀 사업체의 가입 대상 종사자와 가입된 종사자 수를 기입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기준을 고려한 귀 사업체의 가입 대상 종사자와 가입된 종사자 수를 기입합니다.
-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귀 사업체의 가입 대상 종사자와 가입된 종사자 수를 기입합니다.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대상 종사자 수(명) (정규직, 비정규직만 해당)						
가입 종사자 수(명) (정규직, 비정규직만 해당)						

C6 2025년 기준으로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현황을 응답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종사자(임금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귀 사업체의 종사자들이 연말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고 일부 남긴다면 “일부 사용함”으로 응답합니다.

- ☐ 1) 모두 사용함
- ☐ 2) 일부 사용함
- ☐ 3) 전혀 사용하지 못함
- ☐ 4) 해당 없음(연차휴가 부여하지 않음)

C7 귀 사업체(시설·기관)에서 다음의 각 유형의 탄력근무제도 및 출산·양육·돌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2025년 기준으로 각 항목별 시행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시설·기관 특성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아니오”로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의 시차출근제, 남성 근로자를 채용한 적 없는 기관의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등과 같이 해당 시설·기관 특성상 해당없는 제도)

구분	시행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 단시간(시간제)근로제도: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로하는 제도	☐ ①	☐ ②
2) 시차출퇴근제도: 출퇴근시간대에 시차를 두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	☐ ①	☐ ②
3)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은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으로 법정근로시간대로 맞추는 제도	☐ ①	☐ ②
4) 재택근무제도/스마트워킹: - (재택근무제도) 1주일에 하루 이상을 사무실이 아닌 집 혹은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근무방식 - (스마트워킹)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과 가까운 업무공간인 스마트 워킹센터 등에서 일하는 근무방식	☐ ①	☐ ②
5) 출산전후휴가제도: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①	☐ ②
6)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배우자의 출산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3~5일 간의 휴가제도	☐ ①	☐ ②
7) 육아휴직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각각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	☐ ①	☐ ②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	☐ ①	☐ ②
9) 가족돌봄 휴직제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	☐ ①	☐ ②

C8 다음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복리후생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귀 사업체(시설/기관)에서 제공하는 종사자 복리후생 제도를 아래 보기에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1) 직장 내 보육시설 운영 | ☐ 2) 직장 내 수유시설 운영 |
| ☐ 3) 학부모활동 참여를 위한 반차 또는 외출 | ☐ 4) 보육비 지원 |
| ☐ 5)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가족 수당 등) | ☐ 6) 자녀 교육비(학자금) 지원 |
| ☐ 7) 자녀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방학캠프, 영어캠프 등) | ☐ 8) 식사비 보조(급식시설 운영, 식권 제공 등) |
| ☐ 9) 주거비 보조(사택, 기숙사, 주택구입·전월세 자금 지원 등) | ☐ 10) 경조사비 지원 |
| ☐ 11) 본인 및 가족 진료 등을 위한 휴가 | ☐ 12) 건강검진비 지원 |
| ☐ 13) 직원후계시설 운영 | ☐ 14) 여가생활 지원(동호회, 체력단련 등) |
| ☐ 15) 휴양 지원(상여에 포함되지 않는 휴가비, 휴양시설 등) | ☐ 16) 안식휴가 및 장기근속휴가 |
| ☐ 17) 통근 지원(통근버스, 교통비, 주차비 등) | ☐ 18) 근로자 상담(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등) |
| ☐ 19) 복지포인트 | ☐ 20) 시행 중인 제도 없음 |
| ☐ 21) 기타(적어주십시오:) | |

C9 다음은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종사자 대상 폭력(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및 성희롱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현황을 묻는 질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각 항목별 시행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사업체는 4)~6)번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응답합니다.
- 가정 방문을 하지 않는 사업체는 6)번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응답합니다.

구분	시행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1) 종사자 대상 폭력(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및 성희롱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 매뉴얼,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다.	☐ ①	☐ ②	
2) 사업체 내에 종사자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와 담당자가 정해져 있다.	☐ ①	☐ ②	
3) 사업체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 ①	☐ ②	
4) 이용자(입소자)에 의한 종사자 대상 폭력(언어적·정서적·신체적·성적)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교육, 훈련 또는 슈퍼비전을 제공한다.	☐ ①	☐ ②	☐ ③
5) 이용자의 폭력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도구·기준(예: 이용자 폭력의 경고신호 체크리스트)을 활용하고 있다.	☐ ①	☐ ②	☐ ③
6) 종사자가 가정을 방문할 때 안전을 위한 조치(2인 1조 방문 원칙, 보호(호신) 장비 지급 등)를 마련하고 있다.	☐ ①	☐ ②	☐ ③

C9-1 귀 사업체(시설·기관)에서 지난 3년간(2021년~2025년) 이용자(입소자)에 의한 종사자 대상 폭력(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및 성희롱이 발생한 적 있습니까?

☐ 1) 예 → **문 C9-2로 이동** ☐ 2) 아니오 → **문 C10으로 이동**

C9-2 귀 사업체(시설·기관)는 이용자(입소자)에 의한 종사자 대상 폭력(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및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각 항목별로 조치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조치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 해당 이용자(입소자)에 대해 주의, 교육, 상담 등의 조치를 취했다.	☐ ①	☐ ②
2) 해당 이용자(입소자)에 대해 퇴소, 이용금지,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 ①	☐ ②
3) 해당 이용자(입소자) 관련 업무로부터 피해 종사자를 즉각 분리하였다(타 직원 이관, 담당 업무 변경 등).	☐ ①	☐ ②
4) 피해 종사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였다.	☐ ①	☐ ②
5) 피해 종사자에게 휴식기간(휴가)을 제공하였다.	☐ ①	☐ ②

C10 귀 사업체(시설·기관)에서는 종사자 대상 폭력(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및 성희롱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사업체 내 예방교육 강화
☐ 2) 이용자 대상 교육 및 안내 강화
☐ 3) 관련 규정과 매뉴얼 정비
☐ 4) 시설 내 고충처리제도 등 공식절차 강화
☐ 5) 피해 발생시 보호조치(피해자 분리, 휴식·휴가, 부서 이동 등) 마련
☐ 6) 종사자 대상 심리 및 의료 지원 체계 강화
☐ 7) 시설 내 안전을 위한 인프라 강화(비상벨, CCTV 등)
☐ 8) 사업체 내 조직문화 개선
☐ 9) 기타(적어주십시오:)

C11 사업체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사업체(시설·기관)에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2025년 기준으로 각 항목별 시행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시행 여부	
	① 예	② 아니요
1) 경력계획 및 상담: 종사자의 경력계획 수립과 실시를 위한 상담, 워크숍, 멘토링, 정보제공 등	☐ ①	☐ ②
2) 승진·보직관리: 경력계획에 따른 종사자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승진 및 보직 경로	☐ ①	☐ ②
3) 직무순환·부서이동: 종사자의 경력개발을 위한 직무순환, 부서이동 등	☐ ①	☐ ②
4) 교육훈련: 종사자의 경력목표와 경력단계에 맞는 교육훈련	☐ ①	☐ ②
5) 슈퍼비전: 종사자의 경력목표와 경력단계에 맞는 슈퍼비전 제공	☐ ①	☐ ②
6) 기타(적어주십시오:)	☐ ①	☐ ②

C12 귀 사업체(시설·기관)에서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2025년 기준으로 아래 각 항목별 시행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시행 여부	
	① 예	② 아니요
1)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①	☐ ②
2) 교육훈련에 대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 ①	☐ ②
3)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장 사내교육(OJT)을 실시하였다.	☐ ①	☐ ②
4)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또는 학대예방교육 제외).	☐ ①	☐ ②
5)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진행되는 원격교육을 실시하였다(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또는 학대예방교육 제외).	☐ ①	☐ ②
6)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참여를 지원(예: 교육비 및 교육시간)하였다(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또는 학대예방교육 제외).	☐ ①	☐ ②
7)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 등의 학위과정을 지원(예: 학비 및 교육시간)하였다.	☐ ①	☐ ②
8) 종사자의 연간 교육훈련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①	☐ ②

C13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연간 종사자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얼마였습니까?
2025년 세출 기준 종사자 교육훈련비를 기입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교육훈련비”는 종사자의 직무 관련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초청강사료, 수강료(강의참여, 학원수강 등), 위탁교육비, 교육장 임차비용, 연수비, 학자금(직무 관련) 등을 포함합니다.

연간 교육훈련비 총액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원

C14 귀 사업체(시설·기관)는 종사자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까?

☐ 1) 있음 → **문 C14-1** 로 이동

☐ 2) 없음 → **문 D1** 로 이동

C14-1 귀 사업체(시설·기관)에서 종사자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1) 유능한 외부 교육기관의 부재 | ☐ 2)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부재 |
| ☐ 3) 내부 프로그램(교육훈련 등) 기획의 어려움 | ☐ 4) 교육훈련 관련 정보 부족 |
| ☐ 5) 종사자들의 관심 부족 | ☐ 6) 교육훈련 예산 부족 |
| ☐ 7) 교육훈련 참여시 업무공백 등의 어려움 | ☐ 8) 기타(적어주십시오:) |

D. 재무 실태

D1 귀 사업체(시설·기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i 응답가이드

D1-1 이 조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시설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법인회계 또는 시설회계 적용 사업체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9. 2. 5., 2010. 3. 19., 2012. 8. 7., 2018. 3. 30., 2022. 12. 28.>

1. 다음 각 목의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 나.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③항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 ③항 3. 노인장기요양기관: **별표 9**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및 **별표 10**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 ②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은 **별표 1**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 ③ 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은 **별표 2**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 9. 30.>

☐ 1) 예 → **D1-1** 어떤 유형의 시설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은 제외) → **문 D2** 로 이동

☐ 2) 어린이집 → **문 D3** 으로 이동

☐ 3) 노인장기요양기관 → **문 D4** 로 이동

☐ 2) 아니오 → **문 D5** 로 이동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은 제외)만 응답합니다.

D2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2025년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D2-1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세입 현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D2-1 연간 총세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및 별표 1~별표 6에 따라 작성한 기존 결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2025년 회계연도 세입 현황을 결산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세입현황 관련 문항 설명

- 1) 입소자부담금 수입: (생활시설만 해당) 입소자로부터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 총액
- 2) 재산수입: (법인만 해당) 임대료수입, 배당 및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등
- 3) 사업수입: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 법인의 경우 자체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 4)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 5) 보조금수입: 목별로 구분하여 기입
 - ①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 ②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 ③ 시·군·구 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 ④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 6)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 7) 요양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 8) 차입금: 금융기관·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9) 전입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법인 전입금(후원금) 등
- 10) 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 11)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기타예금이자수입, 기타잡수입 등

과목		D2-1 금액(원)									
관	항/목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1) (생활시설만) 입소자 부담금	입소비용수입										원
2) (법인만)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원
3) 사업수입	사업수입										원
4)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원
5) 보조금수입	① 국고보조금										원
	② 시·도 보조금										원
	③ 시·군·구 보조금										원
	④ 기타 보조금										원
6) 후원금수입	지정·비지정 후원금										원
7) 요양급여수입	요양급여수입										원
8) 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기타차입금										원
9) 전입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법인전입금·기타전입금										원
10) 이월금	이월금										원
11) 잡수입	잡수입										원
연간 총세입 = 1)+2)+3)+4)+5)+6)+7)+8)+9)+10)+11)											원

D2-2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세출 현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가이드

D2-2 연간 총세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및 별표 1~별표 6에 따라 작성한 기존 결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2025년 회계연도 세출 현황을 결산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세출현황 관련 문항 설명

1) 사무비

- ① 인건비: 급여, 제수당, 일용직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장 부담금, 기타후생경비 등
- ②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
- ③ 운영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등

2)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3) 사업비: 일반(프로그램) 사업비, 운영비, 교육비

4) 전출금: 시설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기타전출금 등

5)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6) 상환금: 차입금 원금상환금 및 이자지급금

7) 잡지출: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8)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정부보조금 반환금

과목		D2-2 금액(원)									
관	항/목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1) 사무비	① 인건비										원
	② 업무추진비										원
	③ 운영비										원
2) 재산조성비	시설비·자산취득비·시설장비유지비										원
3) 사업비	일반 사업비·운영비·교육비										원
4) 전출금	전출금										원
5) 과년도 지출	과년도 지출										원
6)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
7) 잡지출	잡지출										원
8)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원
연간 총세출 =1)+2)+3)+4)+5)+6)+7)+8)											원

어린이집만 응답합니다.

D3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2025년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D3-1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세입 현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D3-1 연간 총세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및 별표 7~별표 8따라 작성한 기존 결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2025년 회계연도 세입 현황을 결산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세입현황 관련 문항 설명

- 1) **보육료**: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 2) **수익자부담수입**: 보호자가부담하는 특별활동비용 및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등 기타 필요경비
- 3) **보조금 및 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인건비보조금, 운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 4) **전입금**: 전입금(법인, 단체, 개인 등 운영·경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차입금
- 5) **기부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 6) **적립금**: 적립금 및 퇴직적립금에서 이전 받은 금액
- 7) **과년도수입**: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납입된 금액
- 8) **잡수입**: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잡수입
- 9) **전년도이월액**: 전년도 이월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과목		D3-1 금액(원)									
관	항/목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1) 보육료	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										원
2) 수익자부담수입	선택적 보육활동비·기타 필요경비										원
3) 보조금 및 지원금	인건비보조금·운영보조금·자본보조금										원
4) 전입금	전입금·차입금										원
5) 기부금	지정후원금·비지정후원금										원
6) 적립금	적립금										원
7) 과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										원
8) 잡수입	잡수입										원
9) 전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원
연간 총세입 =1)+2)+3)+4)+5)+6)+7)+8)+9)											원

D3-2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세출 현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D3-2 연간 총세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및 별표 7~별표 8에 따라 작성한 기존 결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2025년 회계연도 세출 현황을 결산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세출현황 관련 문항 설명

- 1)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원장급여 및 원장수당, 보육교직원급여 및 보육교직원수당, 기타 일급 또는 단기 채용 임시·일용직 급여,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등
- 2) 운영비: 관리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여비, 차량비, 복리후생비 등) 및 업무추진비
- 3) 보육활동비: 교직원연수·연구비, 교재·교구 구입비, 행사비, 영유아복리비, 급식·간식 재료비 등
- 4) 수익자부담경비: 특별활동 지출 비용,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기타 필요경비 등
- 5) 적립금: 안정적 기관운영 및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등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 6) 상환·반환금: 차입금 상환액, 반환금
- 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구입비
- 8) 과년도 지출: 과년도 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 9) 잡지출: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 10)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

과목		D3-2 금액(원)									
관	항/목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1) 인건비	인건비·기관부담금										원
2) 운영비	관리운영비·업무추진비										원
3) 보육활동비	기본보육활동비										원
4) 수익자부담경비	선택적 보육활동비·기타 필요경비										원
5) 적립금	적립금										원
6) 상환·반환금	차입금 상환·반환금										원
7) 재산조성비	시설비·자산구입비										원
8) 과년도 지출	과년도 지출										원
9) 잡지출	잡지출										원
10) 예비비	예비비										원
연간 총세출 =1)+2)+3)+4)+5)+6)+7)+8)+9)+10)											원

노인장기요양기관만 응답합니다.

D4-1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2025년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D4-1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세입 현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D4-1 연간 총세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및 별표 10,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1~별표 2에 따라 작성한 기존 결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2025년 회계연도 세입 현황을 결산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세입현황 관련 문항 설명

- 1) 입소자(이용자) 부담금 수입: 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기타비급여수입
- 2)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수입
- 3)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 4) 보조금수입: 목별로 구분하여 기입
 - ①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 ②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 ③ 시·군·구 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 ④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 5)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 6) 요양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 7) 차입금: 금융기관·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8) 전입금: 법인 및 설치·운영자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포함)
- 9) 이월금: 전년도 불용액 등으로 이월된 금액
- 10)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기타예금이자수입, 직원식재료비수입 등
- 11) 적립금 및 준비금(특별회계):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해 세출되어 적립된 금액(911목),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세출되어 적립된 금액(912목)

과목		D4-1 금액(원)									
관	항/목	십	억	천	만	십	만	만	천	백	십
1) 입소자(이용자) 부담금 수입	입소(이용)비용 수입										원
2) 사업수입	사업수입										원
3)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원
4) 보조금수입	① 국고보조금										원
	② 시·도 보조금										원
	③ 시·군·구 보조금										원
	④ 기타 보조금										원
5)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비지정후원금										원
6) 요양급여수입	요양급여수입										원
7) 차입금	차입금										원
8) 전입금	법인전입금·기타전입금(후원금 포함)										원
9) 이월금	이월금										원
10) 잡수입	잡수입										원
11) 적립금 및 준비금(특별회계)	운영충당적립금·시설환경개선준비금										원
연간 총세입 =1)+(2)+(3)+(4)+(5)+(6)+(7)+(8)+(9)+(10)+(11)											원

D4-2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세출 현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가이드

D4-2 연간 총세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및 별표 10,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1~별표 2에 따라 작성한 기존 결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2025년 회계연도 세출 현황을 결산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세출현황 관련 문항 설명

1) 사무비

- ① 인건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기타후생경비 등
- ②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
- ③ 운영비: 여비, 수송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임차료, 기타운영비 등

2)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3) 사업비: 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 및 복지용구취득비

4)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기타전출금 등

5)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6) 상환금: 차입금 원금상환금 및 이자지급금

7) 잡지출: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8)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정부보조금 반환금

9) 적립금 및 준비금: 안정적인 기관운동을 위한 적립금 및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준비금

10) 적립금 및 준비금 지출(특별회계): 안정적인 기관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특별회계) 및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특별회계)

과목		D4-2 금액(원)												
관	항/목	십	억	천	만	백	만	십	만	천	백	십	일	
1) 사무비	① 인건비													원
	② 업무추진비													원
	③ 운영비													원
2) 재산조성비	시설비													원
3) 사업비	운영비·프로그램사업비·복지용구취득비													원
4) 전출금	전출금													원
5)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원
6)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
7) 잡지출	잡지출													원
8)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원
9) 적립금 및 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시설환경개선준비금													원
10) 적립금 및 준비금 지출(특별회계)	운영충당적립금·시설환경개선준비금 지출													원
연간 총세출 =1)+2)+3)+4)+5)+6)+7)+8)+9)+10)														원

D5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2025년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D5-1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세입 현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D5-1 연간 총세입

※ 세입현황 관련 문항 설명

1) 사업수입: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수입

2)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3) 보조금수입: 목별로 구분하여 기입

①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②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③ 시·군·구 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④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4)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5) 차입금: 금융기관·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6) 전입금: 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7) 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8) 잡수입: 이자수입, 그 밖의 잡수입 등

과목		D5-1 금액(원)									
관	항/목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1) 사업수입	사업수입										원
2) 과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										원
3) 보조금수입	① 국고보조금										원
	② 시·도 보조금										원
	③ 시·군·구 보조금										원
	④ 기타 보조금										원
4)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비지정후원금										원
5) 차입금	차입금										원
6) 전입금	전입금										원
7) 이월금	이월금										원
8) 잡수입	잡수입										원
연간 총세입 =1)+2)+3)+4)+5)+6)+7)+8)											원

D5-2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세출 현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D5-2 연간 총세출

※ 세출현황 관련 문항 설명

1) 사무비

- ① 인건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기타후생경비 등
- ②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
- ③ 운영비: 여비, 수송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임차료, 기타운영비 등

2)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3) 사업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기타전출금 등

5)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6) 상환금: 차입금 원금상환금 및 이자지급금

7) 잡지출: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8)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정부보조금 반환금

과목		D5-2 금액(원)										
관	항/목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1) 사무비	① 인건비											원
	② 업무추진비											원
	③ 운영비											원
2) 재산조성비	시설비											원
3) 사업비	프로그램사업비											원
4) 전출금	전출금											원
5)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원
6)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
7) 잡지출	잡지출											원
8)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원
연간 총세출 =1)+2)+3)+4)+5)+6)+7)+8)												원

D6 ~ D9 는 모든 기관이 응답합니다.

D6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2022~2024년 각 회계연도 총 세입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 각 회계연도 결산 기준, 원 단위로 기입해 주십시오. 사업체 창설 전인 연도는 0원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연간 총 세입액(원)	2022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원
	2023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원
	2024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원

D7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2022~2024년 각 회계연도 총 세출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 각 회계연도 결산 기준, 원 단위로 기입해 주십시오. 사업체 창설 전인 연도는 0원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연간 총 세출액(원)	2022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원
	2023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원
	2024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원

D8 귀 사업체(시설·기관)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대출·융자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1) 예 → 문 D8-1 로 이동
☐ 2) 아니오 → 문 D9 로 이동

D8-1 최근 3년간(2021~2025년) 투자·대출·융자를 받은 자금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최근 3년간(2021~2025년) 투자·대출·융자 자금 총액(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원
---	----	---	----	----	----	---	---	---	---	---	---

D8-2 최근 3년간(2023~2025년) 투자·대출·융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주된 용도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차례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 2순위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남겨 두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 1) 운영자금(인건비 등) | ☐ 2) 시설자금(설비 및 인테리어 등) |
| ☐ 3) 사업개발비(R&D 비용 등) | ☐ 4) 사업장 부지 확보(건물 및 토지 매입·임차보증금 등) |
| ☐ 5) 재무구조 개선자금(차입금 대환, 긴급자금 등) | ☐ 6) 기타(적어주십시오:) |

D9 귀 사업체(시설·기관)는 향후 사업 자금 조달이 필요하십니까?

- ☐ 1) 필요하다 → 문 D9-1 으로 이동
- ☐ 2) 필요하지 않다 → 문 E1 으로 이동
- ☐ 3) 아직 모르겠다 → 문 E1 으로 이동

D9-1 자금이 필요하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 ☐ 1) 1년 이내
- ☐ 2) 2년~3년 이내
- ☐ 3) 4년~5년 이내
- ☐ 4) 5년 이후

D9-2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 1) 1천만원 미만
- ☐ 2)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 3)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 4)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 5)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 6)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 7)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 8) 10억원 이상

D9-3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주된 용도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 2순위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남겨 두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운영자금(인건비 등)
- ☐ 2) 시설자금(설비 및 인테리어 등)
- ☐ 3) 사업개발비(R&D 비용 등)
- ☐ 4) 사업장 부지 확보(건물 및 토지 매입·임차보증금 등)
- ☐ 5) 재무구조 개선자금(차입금 대환, 긴급자금 등)
- ☐ 6) 기타(적어주십시오:)

E. 사회서비스 디지털 전환

i 응답가이드

• 디지털 전환의 개념

- 디지털 기술을 제품 및 서비스, 이용자 관리, 조직 관리 등 운영 전반에 적용하여 기존에 수동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자동화하고 정보를 디지털화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나가는 활동으로, 디지털화, 온라인화, 비대면화, 무인화, 자동화, 실시간 대응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디지털 기술

- 모바일(스마트폰), 인터넷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통신기술(ICT)부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고도화된 4차 산업혁명 기술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E1 귀 사업체(시설·기관)에서는 아래 업무 영역별로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2025년 기준으로 각 업무 영역별 활용 수준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활용하지 않음	② 거의 활용하지 않음	③ 일부 활용함	④ 적극적으로 활용함
1)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업무	☐ ①	☐ ②	☐ ③	☐ ④
2) 서비스 이용자를 발굴·관리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무	☐ ①	☐ ②	☐ ③	☐ ④
3) 회계, 인사, 직원교육 등 조직 운영과 관련된 업무	☐ ①	☐ ②	☐ ③	☐ ④
4) 대내외 업무협력 및 기관 간 네트워킹을 위한 업무	☐ ①	☐ ②	☐ ③	☐ ④

E2 귀 사업체(시설·기관)에서는 사업 운영을 위해 아래 항목의 시스템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2025년 기준으로 각 항목별 사용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사용 여부		
	① 운영 전반에 사용함	② 일부 기능만 사용함	③ 사용 안함
1) 공공 시스템 (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노인장기요양기관시스템, MHIS)	☐ ①	☐ ②	☐ ③
2) 민간 상용 시스템 (예: 바우처리, 케어포 등의 ERP, 그룹웨어)	☐ ①	☐ ②	☐ ③
3) 자체 개발 시스템 (예: 자체 개발 업무 시스템, 자체 개발 모바일 앱 등)	☐ ①	☐ ②	☐ ③
4) 기타 (적어주십시오:)	☐ ①	☐ ②	☐ ③



응답
가이드

E3

E4

는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항목의 디지털 기술의 정의와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물인터넷:**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해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상호 소통하도록 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함. 주로 센서를 통해 기기 또는 대상자의 활동을 감지하고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 모니터링 등의 활동에 활용됨.
 (예시: 화재·가스누출·이용자 활동 등을 감지하여 응급상황 시 담당자를 호출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로봇:**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기계장치를 의미함. 단순한 기계와 달리 복잡한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자율적으로 동작한다는 점이 특징임.
 (예시: 이송보조 로봇, 반려 로봇, 서빙 로봇 등)
 - 인공 지능:**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언어 이해 능력 등을 인공적으로 기계에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함. 복잡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주어지는 데이터를 토대로 스스로 학습하여 발전할 수 있어,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지능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예시: 음성인식 후 대화 및 정보를 제공하는 스피커(애플 시리, KT 기가지니, SKT 누구 등), 질문에 답변하고 글을 생성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ChatGPT 등), 언어 이해 및 작성 자동화(구글 번역 등), 데이터 분석 자동화(주식시장 분석 및 상품 추천 등을 수행하는 로봇어드바이저 등), 기계 운용 자동화(자율주행자동차 등))
- ※ 인공지능과 로봇의 차이**

 - ☞ 인공지능은 반드시 기계의 형태를 띠지는 않으나 로봇은 기계의 형태를 가짐
 - ☞ 인공지능과 달리 로봇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할 수는 없음
 - ☞ 로봇에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된 경우에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스토리지(저장공간),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기술 자원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양만큼 할당 받아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물리적 자원을 구매하여 자신의 장소에 두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사용하므로 장소와 기기의 제약이 낮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예시: 저장공간을 대여하는 웹하드 방식(구글드라이브, 드롭박스 등), 소프트웨어를 대여하는 웹오피스 방식(구글 캘린더/닥스(Docs) 등), 서버를 가상으로 대여하는 방식(아마존 웹서비스(AWS) 등)
 - 빅데이터 분석:** 매우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형식이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적합한 기법, 기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의미함. 사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외부 기관 또는 업체의 분석 환경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
 (예시: 방대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정보를 분석하여 이용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활용)

E3 2025년 기준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이용자는 아래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향후 5년 내에(도) 아래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길 희망하십니까?
아래 각 항목별로 현재 활용 여부 및 향후 활용 희망을 응답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 공식적인 지침 또는 규정에 의해 해당 기능 사용이 금지된 경우 현재 활용 여부에서“규정상 사용 금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예시: 비공개시설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을 사업 지침에서 금지함)
- 향후 활용 희망은 현재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현재 외부 지침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어있으나 향후에는 사용하길 희망한다면 향후 활용 희망에서“희망함”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E3-1 현재 활용 여부			E3-2 향후 활용 희망	
	① 예	② 아니오	③ 규정상 사용 금지	① 희망함	② 희망하지 않음
1) 사물인터넷(IoT) (예: 응급안전알림서비스(센서))	☐ ①	☐ ②	☐ ③	☐ ①	☐ ②
2) 로봇 (예: 돌봄로봇 효돌·효순)	☐ ①	☐ ②	☐ ③	☐ ①	☐ ②
3) 인공지능(AI) (예: 인공지능 스피커(애플 시리))	☐ ①	☐ ②	☐ ③	☐ ①	☐ ②
4) 클라우드 컴퓨팅 (예: 구글드라이브,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닥스)	☐ ①	☐ ②	☐ ③	☐ ①	☐ ②

E4 2025년 기준 귀 사업체(시설·기관)에서는 이용자 발굴·관리 및 서비스 개발에 아래의 기술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향후 5년 내에(도) 아래의 기술을 활용하길 희망하십니까?
아래 각 항목별로 현재 활용 여부 및 향후 활용 희망을 응답해 주십시오.

i 응답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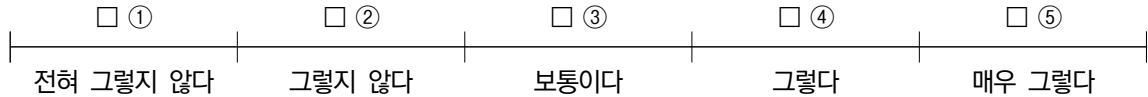
- 공식적인 지침 또는 규정에 의해 해당 기능 사용이 금지된 경우 현재 활용 여부에서“규정상 사용 금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예: 비공개시설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을 사업 지침에서 금지함)
- 향후 활용 희망은 현재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현재 외부 지침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어있으나 향후에는 사용하길 희망한다면 향후 활용 희망에서“희망함”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E4-1 현재 활용 여부			E4-2 향후 활용 희망	
	① 예	② 아니오	③ 규정상 사용 금지	① 희망함	② 희망하지 않음
1) 사물인터넷(IoT) (예: 응급안전알림서비스(센서))	☐ ①	☐ ②	☐ ③	☐ ①	☐ ②
2) 로봇 (예: 돌봄로봇 효돌·효순)	☐ ①	☐ ②	☐ ③	☐ ①	☐ ②
3) 인공지능(AI) (예: 인공지능 스피커(애플 시리), 대화형 인공지능(ChatGPT))	☐ ①	☐ ②	☐ ③	☐ ①	☐ ②
4) 클라우드 컴퓨팅 (예: 구글드라이브,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닥스)	☐ ①	☐ ②	☐ ③	☐ ①	☐ ②
5) 빅데이터 분석 (예: SNS 데이터 분석,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 사용)	☐ ①	☐ ②	☐ ③	☐ ①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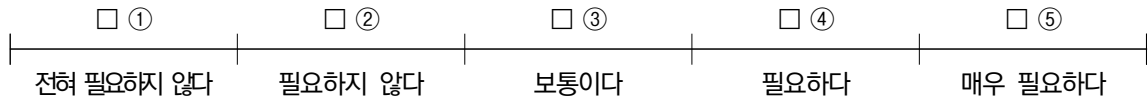
E5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디지털 전환 준비 수준은 어떠합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적자원의 역량이 높은 수준이며 인력개발·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영진의 역량 수준과 의지가 높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사업체 내 및 외부 기관과 디지털(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원활하게 근무하고 협업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4) 장기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E6 귀 사업체(시설·기관)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을 현재보다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7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십니까?



E8 귀 사업체(시설·기관)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현재 겪고 있거나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차례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디지털 전환 추진에 필요한 예산 부족
 - ☐ 2) 기관 및 직원의 역량 및 정보 부족
 - ☐ 3)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업무 가중
 - ☐ 4) 직원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거부감
 - ☐ 5) IT기업 등 협업할 외부 자원의 부족
 - ☐ 6) 이용자의 물리적 환경 수준 미비(기기·통신환경)
 - ☐ 7) 이용자의 정보기기 활용 능력 부족
 - ☐ 8) 이용자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거부감
 - ☐ 9) 관련 법·제도 규제에 의한 제약
 - ☐ 10) 정보보안, 개인정보유출 등 우려
 - ☐ 11) 기타(적어주십시오:)

E9 사회서비스 분야 사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차례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디지털 전환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
- ☐ 2) 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기기·통신환경 등)
- ☐ 3)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 4) IT기업 등 전문기관 연계 지원
- ☐ 5) 이용자의 물리적 환경 개선(기기·통신환경)
- ☐ 6) 이용자의 정보기기 활용 교육 확대
- ☐ 7) 관련 법·제도 규제 유연화
- ☐ 8)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지침 마련
- ☐ 9) 기타(적어주십시오:)

F. 서비스 질 관리

F1 귀 사업체(시설·기관)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각 항목별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예	② 아니오
1) 서비스 과정 및 성과를 점검·개선하기 위한 품질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 ①	☐ ②
2)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시설 개선 등에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 ①	☐ ②
3) 지난 3년간(2021~2025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으로 컨설팅 등에 참여한 적 있다(시설 평가의 후속조치로 컨설팅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①	☐ ②
4) 이용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①	☐ ②
5)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 ①	☐ ②
6) 사업(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자체 평가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만족도 조사 제외).	☐ ①	☐ ②
7) 만족도 조사, 효과성 평가 등의 결과 공유 및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사내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①	☐ ②
8) 기타(적어주십시오:)	☐ ①	☐ ②

F2 귀 사업체(시설·기관)는 지난 3년간(2023~2025년) 사회서비스 분야의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해당 평가 제도가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 평가 경험 여부 및 도움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 가이드**
- 4)번은 **B5** 에서 ①번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응답합니다.
 - 항목별 평가의 대상이 되었던 경우 '예', 평가에 해당하는 시설·기관이나 평가 대상이 된 적 없는 경우 '아니오', 평가에 해당하는 시설·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시설·기관이 아님'으로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 1)번에서 '해당 시설·기관이 아님'으로 응답합니다.
 - **F2-2** 는 **F2-1** 에서 '예' 또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응답합니다.

• 평가제도

-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및 환경, 시설 운영, 서비스 제공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며, 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을 부여함.
- 어린이집 평가 :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운영, 교육,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제도이며, 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을 부여함(2026년부터 평가등급제 폐지).
- 장기요양기관 평가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수급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운영, 급여 제공 과정 및 결과, 수급자 권리보장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며, 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을 부여함.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 서비스 품질향상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사회서비스(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대상으로 기관 운영,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 평가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며, 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을 부여함.

구분	F2-1 평가 경험 여부			F2-2 서비스 질 향상 도움 정도에 대한 의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 시설·기관이 아님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1) 사회복지시설 평가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④	☐ ⑤
2) 어린이집 평가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④	☐ ⑤
3) 장기요양기관 평가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④	☐ ⑤
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④	☐ ⑤
5) 기타(적어주십시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④	☐ ⑤

F3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인증 현판 및 인증서 제공)입니다.
귀 사업체(시설·기관)는 본 조사 이전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알고 있었습니까?

i **응답가이드**

- B5 에서 ①번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응답합니다.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제고 유도를 위해 2022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인증 신청 기관의 품질 수준을 5개 영역(서비스 운영, 인적 자원, 안전·예방, 재정 건전성, 경영관리)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인증을 받은 기관에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고 기관홍보물·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1) 예 → **문 F3-1** **로 이동**

☐ 2) 아니오 → **문 F4** **로 이동**

F3-1 귀 사업체(시설·기관)는 향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F3-2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부여가 사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2) 도움이 되지 않는다
☐ 3) 보통이다
☐ 4)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 6) 잘 모르겠다

F4 다음 중 사회서비스 분야 사업체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차례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시장 진입 기관 대상 사전 교육 확대
☐ 2) 사업체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체계 개선(대상 확대, 기준 개선 등)
☐ 3)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기관 대상 컨설팅 등의 지원 확대
☐ 4)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인증, 홍보 등을 확대
☐ 5)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 우선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인센티브 확대
☐ 6) 서비스 질이 미비한 기관에 대한 조치 강화
☐ 7) 사회서비스 분야 품질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강화 및 전문인력 확보
☐ 8)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사업체의 이해도 및 인식 개선
☐ 9) 기타(적어주십시오:)

G.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정책 인식

G1 귀 사업체(시설·기관)에서는 해당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까?

☐ 1) 참여함 → 문 G1-1로 이동

☐ 2) 참여하지 않음 → 문 G2로 이동

G1-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대표협의체

☐ 2) 실무협의체

☐ 3) 실무분과

G2 다음은 관할 지자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 이다	④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1) 시군구는 지역의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서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시군구는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간의 협의과정을 중시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4) 시군구는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5) 시군구는 여러 사회서비스 기관의 협력과정에서 조율과 중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6) 우리 기관과 시군구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7) 시군구는 사회서비스 사업에 있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8) 시군구는 자신들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9) 시군구는 자신들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10) 우리 기관은 시군구를 신뢰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G3 다음은 다른 민간 사회서비스 사업체(시설·기관)와의 협력 네트워킹(민-민 협력)의 활성화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활성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활발하 지 않다	② 활발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활발하다	⑤ 매우 활발하다
1)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다른 사회서비스 사업체(시설·기관)와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도모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사회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상호의뢰가 이루어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4) 시설·기자재 등 물적 자원에 대한 공유(교환)가 이루어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5)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G4 국가(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정책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소득과 무관하게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전 국민을 대상으로)
- ☐ 2) 소득이 낮은 사람(취약계층)
- ☐ 3) 모르겠음

G5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국가(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주도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 국가(중앙정부,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 3) 국가(중앙정부, 지자체)는 관리만 하고, 민간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 4) 민간이 스스로 알아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G6 다음 중 사회서비스업이 발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차례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신규 서비스의 개발 및 확충
- ☐ 2) 기존 서비스 보장 수준 확대
- ☐ 3) 사회서비스 가격 자율화
- ☐ 4) 사회서비스 진입 규제 개선
- ☐ 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 6) 사회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
- ☐ 7) 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 지원
- ☐ 8)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운영 관련 컨설팅 제공
- ☐ 9)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세제 감면 및 세제 지원 확대
- ☐ 10)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투자·대출·융자 지원 강화
- ☐ 11)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 ☐ 12)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 개선
- ☐ 13) 기타(적어주십시오:)